

행정처분 위법여부 판단 처분 시 제출되지 않았던 추가 자료까지 근거 행정처분 취소 가

능: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63379 판결



1. 사안의 개요

- (1)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결정 - 분할연금, 분할비율 결정
- (2) 혼인기간 산정 자료 - 국민연금공단은 호적 등 공기록 근거 심사
- (3) 배우자의 가출, 별거, 실질적 혼인 관계 중단 사실 제출되지 않음
- (4) 혼인기간 중 가출, 별거, 실질적 혼인관계 소멸 사실 증거자료를 행정소송 중 추
가 제출하여 분할연금 비율결정 취소 주장
- (5) 서울행정법원 판단: 관련 자료의 사후적 제출허용, 사실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인정, 연금분할비율 기존처분의 취소 판결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1) 국민연금공단(피고)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피고에게
는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심사권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을 기준으로 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혼 당사자 간
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
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
고 당사자는 위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러한 공단(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분할연금 승인처분을 쟁
송의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부존
재 기간을 주장·증명하여 분할연금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으며, 법원도 분할연금
승인에 관한 혼인인정기간을 증거관계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① 배우자와 이혼하

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0세가 되었을 것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위 혼인기간에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을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을 열거하였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

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63379 판결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